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: 한선미 의원)

의안 번호	23-12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2. .

발 의 자 : 한선미, 고병준, 권영숙
권인순, 김승수, 남해석
안미자, 오옥자, 이상원
차해영, 채우진, 홍지광

1. 제안이유

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여,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다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지원 사업 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라. 지원 사업의 지도·감독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악취방지법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불임
- 다. 입법예고: 2023. 2. 1. ~ 2023. 2. 5.
- 라. 조례안: 불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란 「악취방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.
2. “생활악취”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 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.
3. “사업자”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사업자의 책무)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,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,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 사업 등) 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
2.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
3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: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
 - 2. 생활악취 방지사설 설치 및 개선사업
 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관련 조문: 조례안 제6조(지원 사업 등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장용수
연 락 처	02-3153-9271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악취방지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악취”란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2. “지정악취물질”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악취배출시설”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, 기계, 기구,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4. “복합악취”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5. “신고대상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

나.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

제3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 시책에 대한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

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·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·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 방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